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3

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:최종윤·김승원·김영호

김진표 • 도종환 • 양정숙

오영환 · 이인영 · 인재근

임종성 · 조승래 · 허종식

홍기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임.

따라서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,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 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).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입양 적격성심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2의2. 제10조의2에 따른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서류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5조의2(입양가정 점검) ①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이 성립된 후 양자와 양친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에게 입양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고받은 때부터 양자가 12세가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에 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양친이 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 입양알선 의뢰를
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)
	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양친이 되
	려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자
	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
	위하여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
	<u>를 둔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적격성심
	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
	로 정한다.
제11조(가정법원의 허가) ① 제9	제11조(가정법원의 허가) ①
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	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	
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	
를 받아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제10조의2에 따른 입양적
	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서
	<u>류</u>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25조의2(입양가정 점검) ① 입
	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이 성

립된 후 양자와 양친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입양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
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
청장은 보고받은 때부터 양자
가 12세가 될 때까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
으로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양
육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